

2007. 7. 10(화) 14:00 이후 보도하여 주십시오



- ▶ 2007. 7. 10. 배포
- ▶ 총 7 쪽 (사진없음)

보 도 자 료

- ▶ 노사관계법제팀장 김양현
- ▶ 노사관계법제팀 최준하 서기관

TEL : 503-9734 ~ 5

E-MAIL : cjha27@paran.com

FAX : 503-9731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필수공익사업, 파업해도 이 업무만은 유지해야”

- 노동부, 11일 「필수유지업무 범위」관련 법안 입법예고 -

□ 개정 배경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절차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이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 주요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 철도·도시철도 사업은 교통수단간 대체성이 높고,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서비스 성격을 감안하여
 - 승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중정비를 제외한다)와 선로점검·보수 업무를 정하였다.
- 항공운수사업은 항공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 업무 등을 정하였다.
- 수도·전기사업의 경우 생존 필수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하여 서비스의 정상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정하였다.

- 병원사업의 경우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긴급의료·중환자치료 및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였다.
-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망의 유지관리 및 통신망의 고장복구 업무를 필수 유지업무로 정하였다.

□ 설정기준

-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선진화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하였다.
- 즉,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의 경우 보다 엄격히 설정한 반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의 경우 보다 유연하게 설정했으며,

*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

**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협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

-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급적 업무를 세분하여 그 업무의 최종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노동력 공급의 상시성 여부 등 다각도로 업무를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중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열거·예시하였다.

- 이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각 업종별 노사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5개 TF를 구성, 4월말 까지 약 25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 기타 개정사항

- 그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내부조직에 대한 조정·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지부·분회 등의 별도의 설립신고 근거규정을 삭제하였다.

< 붙임 > : 「각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1부

각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사업 구분	시행령안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정기노선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중정비를 제외한다)와 선로 점검·보수 업무를 말한다.
항공운수사업	2. 항공운수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항공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운항통제 업무, 시스템·통신의 유지보수 업무 나.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를 제외한다)·안전보안관리·유도·견인·급유·지상전원공급·제설·제빙·탑승교 운전 업무,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다.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돕기 위한 시설
수도사업	3. 수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수돗물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취수·정수(소규모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

사업 구분	시행령안
전기사업	4. 전기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전기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발전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안전관리 업무 나. 송·변전 및 배전 업무 중 지역급전소·급전분소·유인변전소 운영업무, 계통*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배전운영실 계통관리·배전계통센터 운영·통신센터(SCADA** 설비를 포함한다) 운영·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업무 중 중앙 급전·지역 급전·급전 운영·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한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 ** 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가스사업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제외한다)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정제·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병원사업	7. 병원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다. 위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처방용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

사업 구분	시행령안
혈액공급사업	8. 혈액공급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수혈용 혈액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채혈·검사·제제*·수송 업무를 말한다. * 제제(製劑) : 각종 혈액제제(적혈구, 혈장성분, 혈소판, 백혈구 등)의 제조 및 표지부착
한국은행사업	9. 한국은행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중앙은행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같은법 제47조 내지 제8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재 등의 업무 나. 가 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시설보호 업무 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통신사업(우정사업제외)	10. 통신사업(우정사업을 제외한다)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통신망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나. 가입자의 고장신고 접수·수리 업무
우정사업	11. 우정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우편역무* 나.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는지 증명하는 우편역무 ***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

『노조법시행령개정안』 관련 Q&A

2007. 7.

노 동 부

- 목 차 -

1.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핵심내용	1
2. 「필수유지업무 TF」 구성배경 및 운영경과	3
3. 일부노조가 TF 논의에 불참하여 의견수렴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4
4.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 기본원칙	5
5. 개정안 필수유지업무 범위의 ILO 기준 부합 여부	6
6. 업무구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불필요하게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7
7.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이유	8
8. 공익사업의 정의행위 관련 외국 입법례	9
9. 대체근로 허용을 위한 파업참가자수 산정방법	10
10. 노동조합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 제도를 폐지한 이유	11

1. 시행령 개정배경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핵심내용

□ 개정배경

- 노사관계 선진화입법('06.12.22 국회통과)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08.1.1 시행)

* 원칙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시에도 업무유지 의무 부과

- 그 구체적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노조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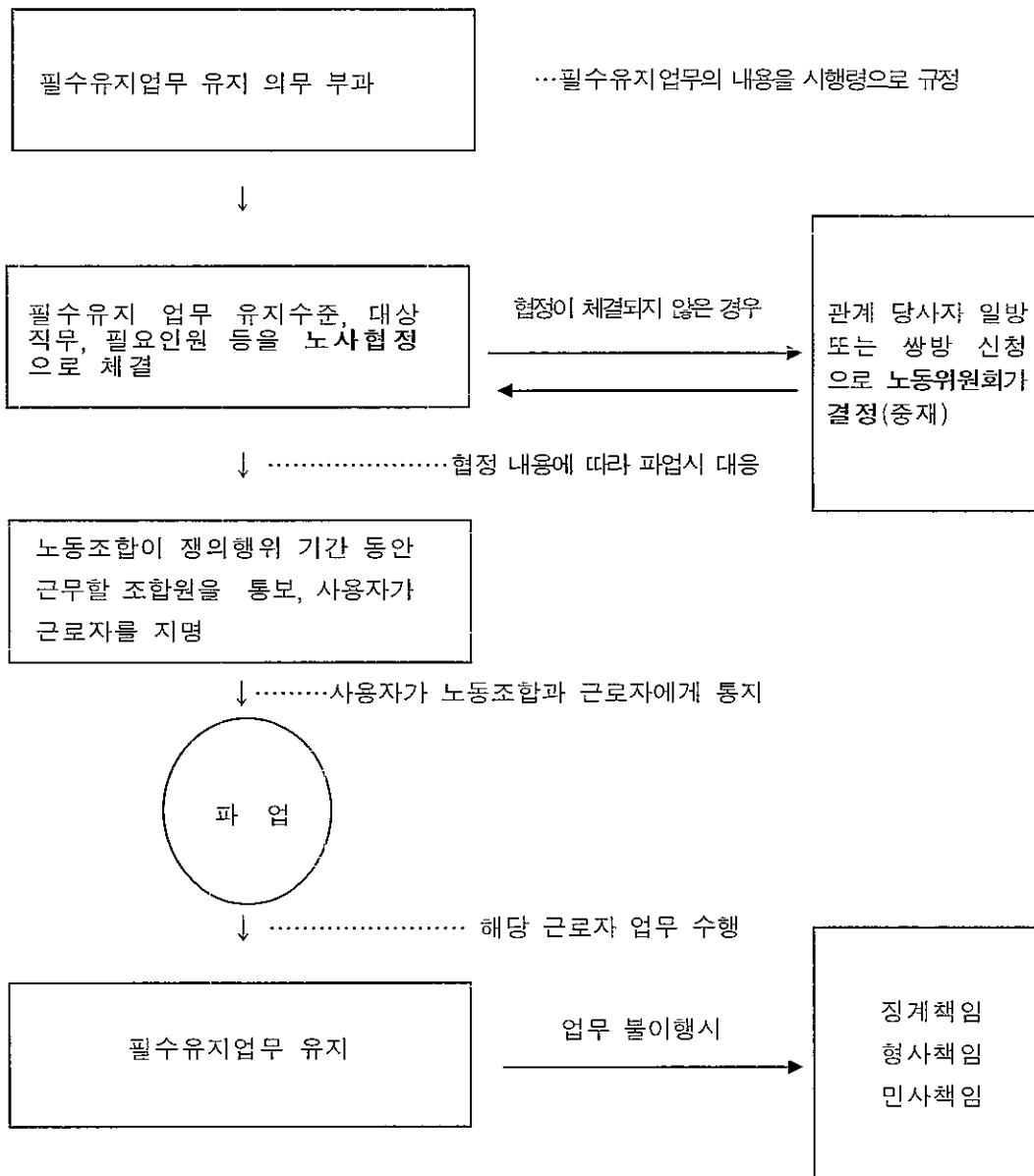
□ 필수유지업무제도 핵심 내용

- ① 업무의 정·폐시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②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협정(“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체결

※ 노사간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결정

-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통보, 사용자는 근무자를 지명, 필수유지업무 수행
- ④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파업참가자수 산정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프로세스 >



2. 「필수유지업무 TF」 구성배경 및 논의경과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소업무의 결정에 있어 노사정 3주체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

※ 최소업무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소 숫자에 관한 결정에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노사단체들이 관련되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 정부는 이러한 ILO 기준에 따라 시행령 법제화 과정에 업종별 노사,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업종별 TF를 구성·운영하여 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 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현실에 부합한 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음

구 분	그간의 논의경과
'07.1월	■ 「필수유지업무 TF」 구성(1월말) * 업종별 노사 관계자, 산업전문가,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무원 등으로 5개 TF 구성 * 철도·도시철도, 항공 / 수도, 전기 / 가스, 석유 / 통신, 한국은행 / 병원, 혈액
'07.2월말 ~4월말	■ 각 업종별 노사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선정 관련 노사의견서 접수(2월말) ■ 각 TF별 필수유지업무 범위 관련 TF회의(25차례) 및 현장 방문 실시(4월말)
'07.5월 ~6월말	■ TF 기본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5.3) ■ 시행령안 마련(5월말) 및 관계부처 협의, 내부토론

3. 일부노조가 TF 논의에 불참하여 의견수렴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공공운수연맹 산하 일부 노조(발전, 항공 조종사, 철도)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 논의참여를 거부하여 이들의 직접적 의견수렴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 해당 사업장의 현장방문, 동종업종 노사 관계자, 관계 전문가, 상급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간접적 방법으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 한편, TF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상황에 대하여 수시 통보하고, 회의참석을 수차례 요청
-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로 부터 의견 수렴을 계속할 것이므로
 - 이들로부터 합리적 의견제시가 있으면 적극 검토할 계획

4.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의 기준

○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법률개정의 기본취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는바, 현저한 공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한 쟁의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 ILO 기준에 따라 각 사업과 업무의 기본성격을 감안

- ①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생존필수서비스의 경우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수유지업무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
- ②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의 경우 쟁의권 보호 관점에서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설정

○ 다양한 개념적 요소를 활용하여 업무를 분석

- ▲ 업무의 정·폐시 영향 : 당해 업무가 공중의 생명·건강·안전·일상생활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성 정도
- ▲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 당해 서비스·재화의 공급이 독·과점 방식인지 경쟁적 상황인지를 고려
- ▲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 당해 업무의 숙련도·전문성·경험 등이 높은 수준인지 여부, 노조 조직률 및 외부 대체인력 확보의 용이성, 외주화 정도
- ▲ 근무형태의 특성 등 : 정규시간·24시간 연속 근무, 특정시간·기간 근무, 공정·업무의 독립성·연관성 정도

○ 각 필수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철도사업법·항공법·전기사업법, 수도법 등) 규정도 고려

※ 이들 특별법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 독점적 업무, 필수적 업무, 보편적 업무를 규정

5. 개정안 필수유지업무 범위의 ILO 기준 부합 여부

○ ILO는 파업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으로 3가지 제시

- (1)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 (2)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협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 (3)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포함

*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2006

○ 개정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ILO 기준에 입각하여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 유지운영수준 등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시행령개정안은 그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 각 필수공익사업의 기본 성격을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로 구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지정 범위를 달리하고
- 각 사업의 업무를 가급적 상세히 세분하여, 최종 서비스생산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대체가능성이 높고, 상시적이지 않은 업무 등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ILO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6. 업무구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불필요하게 필수 유지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사업단위로 쟁의권이 전면 제한되었던 구 직권중재제도와 달리, 필요최소한의 업무에 한해 쟁의권을 제한하자는 법개정 취지에 걸맞게 가급적 업무를 세분하여 분석
- 우선 노사 양측으로부터 세부적 업무분류표 및 필수유지업무 설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각 단위업무별 정·폐시 영향, 대체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 필수유지업무 선정의 기본 원칙에 입각, 업무공정상 필수적이지 않은 영업·행정지원·건설·중정비 등의 분야는 공통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서 배제하였고
 - 직접 생산 공정에 관련된 업무라 할지라도 대체인력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성이 높은 분야는 제외하였음
- 한편, 업무분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업무가 포함되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 반면, 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나아가 기술발전 또는 공정변화에 따른 업무조정에 있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 아울러 같은 업종일지라도 기업마다 나름대로 업무구분을 달리하여 당해 사업의 일의적 업무구분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감안할 필요

7.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이유

- 개정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되, 그 유지운영 수준·대상직무·필요인원 등은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 이는, 필수유지업무의 적정 유지운영수준이 당해 필수공익사업의 실태, 파업상황 등에 유동적일 수 있음을 반영
 - 즉, 파업의 규모(산별 파업 여부 등), 대체 서비스 가능성,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유지운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 법령으로 정하기 보다는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 내지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근거

8.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관련 외국 입법례

- 공익사업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는 그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의 쟁의권과 일반 공중의 공익보호의 조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

<1> 필수유지업무 제도 사례

- ▲ 프랑스 :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파업시에도 최소한 유지하여야 할 최소업무(일반적으로 규칙으로 정함)와 그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
- ▲ 이탈리아 : 교통, 전기·가스·수도, 건강, 교육 등의 사업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단체협약을 통해 유지,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보장위원회』에서 유지수준 결정

<2> 다른 형태의 파업권 제한 사례

- ▲ 미국 : 상·하수도, 전력, 교통, 가스, 공항 등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이 부인되며, 한편 국가적 비상상황시 긴급조정절차를 적용(사실조사⇒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연방법원에 파업금지 명령 신청⇒금지기간동안 조정⇒사용자의 최종제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투표)
- ▲ 영국 : 특정사업분야 또는 비상사태시에 국가가 대체인력(군대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보호를 위한 업무 지속, 가스·수도·전기사업에서는 공급의 대부분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근로계약 위반행위를 형벌로서 금지
- ▲ 일본 : 국·공영기업 종사자의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그 대상조치로 노동위원회의 결의 또는 주무대신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중재 가능

9. 대체근로 허용을 위한 파업참가자수 산정방법

- 시행령 개정안은 “파업참가자”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로 정의
 - 따라서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는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 교대제 근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미리 예정하고 연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연장근로 시간 중의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참가로 간주
- 한편, 파업참가자 수는 1일단위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당일의 파업참가자 수에 대응한 당일의 대체근로만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

10. 노동조합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 제도를 폐지한 이유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결체로서 자체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을 둘 수 있음
- 그러나, 그간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노동조합이 그 내부조직에 대한 조정·통제가 어려워져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지적
- 이에,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지부·분회 등의 별도의 설립 신고 근거 규정을 삭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되어 2008. 1. 1.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 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도 폐지(제7조 삭제)

- (1)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설치되는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운영상 혼선이 발생함.

- (2)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그 조직운영에

있어 자주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별도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3) 노동조합이 내부조직에 대한 조정·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각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설정(안 제22조의2)

-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3)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안 제22조의4)

(1)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
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
는 하도급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의 산
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파업참가자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
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로 하고, 파업참가자 수는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3) 파업참가자 수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업참가자 수에 따른 적정 대체근로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노동부 장관의 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으로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제33조 제1항 단서 삭제)

(1) 노동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서 수리 등의 행정관청으로서의 업무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관장하도록 함.

(2) 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으로서의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일원적으로 관장함으로써 관련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을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행정관청”을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을 “법 제38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2조 제목 중 “중지명령”을 “중지통보”로 하며, 동조 본문 중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을”를 “쟁의행위의 중지통보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정기노선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중정비를 제외한다)와 선로점검·보수 업무를 말한다.

2. 항공운수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항공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운항통제 업무, 시스템·통신의 유지·보수 업무

나.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를 제외한다)·안전보안관리·유도·견인·급유·지상전원공급·제설·제빙·탑승교 운전 업무,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다.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수돗물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규제의 준수
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전기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를 말한다.

가. 발전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
함한다)·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안
전관리 업무

나. 송·변전 및 배전 업무 중 지역급전소·급전분소·유인변
전소 운영업무, 계통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
정·배전운영실 계통관리·배전계통센터 운영·통신센터
(SCADA 설비를 포함한다) 운영·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업무 중 중앙 급전·지역 급전·급전 운영·전
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제외한다)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인수·제조·저
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정제·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7. 병원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다. 위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처방용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수혈용 혈액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채혈·검사·제제·수송 업무를 말한다.

9. 한국은행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중앙은행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같은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나. 가 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
영·통신·시설보호 업무

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10. 통신사업(우정사업을 제외한다)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통신망
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나. 가입자의 고장신고 접수·수리 업무

11. 우정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최
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우편역무

나.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
명과 특별송달 업무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
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견해제시의 요청은 그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4조제1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법 제43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업참가자”란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그 수는 1일 단위로 산정한다.

제33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11호를 삭제하며, 제12호 중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을 “쟁의행위의 중지통보”로 하고, 제3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참작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반 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서류를 비치·보존한 경우 다. 그 밖에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6조 제1항제1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법 제96조 제1항제2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96조 제1항제3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4.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96조 제2항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통보를 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다. 그 밖에 통보를 게을리 한 경우	법 제96조 제2항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6.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96조 제2항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7.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96조 제2항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금액은 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 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 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 제>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 의 관계) ①·② (생 략) ③ 2 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 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 은 산업종류에 따른다.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 의 관계) ①·② (생 략) <삭 제>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 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 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

한다.

1. ~ 2. (생략)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 제1항·제2항, 제40조 제2항,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 ①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단체

1. ~ 2. (현행과 같음)

②-----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날의 3일전까
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
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
사항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지원의 방법

②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22조(중지명령) 행정관청은 법 제
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
행위의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
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중지통보)-----
-----쟁의
행위의 중지통보를-----

-----.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필
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정기노선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중정비를 제외한다)와 선로점검·보수 업무를 말한다.

2. 항공운수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항공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운항통제 업무, 시스템·통신의 유지·보수 업무

나.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를 제외한다)·안전보안관리·유도·견인·급유·지상전원공급·제설·제빙·탑승교 운전 업무,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다.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수도물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전기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발전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안전관리 업무

나. 송·변전 및 배전 업무 중 지역급전소·급전분소·유인 변전소 운영업무, 계통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배전운영실 계통관리·

배전계통센터 운영·통신센터(SCADA 설비를 포함한다) 운영·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업무 중 중량 급전·지역 급전·급전 운영·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제외한다)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정제·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7. 병원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말한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수술·

혈액투석 업무

다. 위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

사·응급약제·처방용 환자

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에서 필수유지업

무는 수혈용 혈액의 정상적 공

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채혈·검사·제제·수송 업무를

말한다.

9. 한국은행사업에서 필수유지업

무는 중앙은행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

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

영에 관한 업무, 같은법 제47

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금융기관
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금
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
재 등의 업무

나. 가 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
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
영·통신·시설보호 업무

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
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10. 통신사업(우정사업을 제외한
다)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통신
망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
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를 말한다.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
영·관리 업무

나. 가입자의 고장신고 접수·
수리 업무

11. 우정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최
소한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말한다.

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신 설>

의한 기본 우편역무

나.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
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운

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42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
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
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
자가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
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당사자는 필수유지업
무 등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견해제시의 요청은 그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법 제43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업참가자”란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그 수는 1일 단위로 산정한다.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법 제53조제1항-----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7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연 락 처	(02) 503 - 9734